

의료법				번호: IV - B - 3	
제 목	국문	헌법적 관점에서 본 HIV 집단검진			
	영문	Constitutional View on HIV Screening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정금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영문	Chung, Keum Ye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 표 자	정금례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p>1. 목적</p> <p>집단검진은 현대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전염병의 유행을 억제하고 만성질환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시도 중에서도 역사가 길고 일반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로서 집단검진이 실시될 때에는 양성의 불평등이나 인종적 차별 또는 성적 금기와 빈곤과 같은 표지와 관련되어 수행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보건체제와 공중보건정책결정자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신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만약 집단검진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상되고 조직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사항에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을 유도하고 집단과 개인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HIV 예방을 위한 정책수행과정에서 집단검진을 위한 강제적 국가권력발동이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p> <p>2. 방법</p> <p>20세기에 들어 입법자들은 학교와 작업장에서 결핵에 대해 집단검진을 하기도 하고, 신생아의 매독을 집단검진하기도 하고, 수형자들의 HIV와 결핵을 집단검진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임신부에 대한 전반적인 HIV 집단검진을 위한 제안을 했으나 강제와 동의라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문헌과 판례를 참조하여 HIV 집단검진에서 생기는 헌법적 문제를 규명하려 한다.</p> <p>3. 결과</p> <p>개인은 보건상 위험이나 임상증후의 병력 때문에 검사를 위해 종종 선택된다. 이에 대하여 집단검진은 한정된 집단에 대한 의학적 검사의 체계적 적용이다. 전형적으로 의학적 개별검사는 진단이나 임상목적으로 시행하지만 집단검진은 외관상 건강하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상태를 확인하는 사례발견과 같은 광범위한 공중보건목적을 위해 시도된다.</p> <p>집단검진은 때로 정치적인 논쟁을 수반한다. 입법자는 긴급한 보건문제에 대하여 뭔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를 위해서 그와 관련된 입법을 하고 법집행자 역시 보건행정을 열심히 수행한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데, 그러한 욕구에 부합하는 수단이 대규모 집단검진이다. 어쨌든 집단검진은 개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차별을 겪게 할 수 있다.</p> <p>집단검진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을 지우므로 공중보건당국은 두 가지 광범한 기준아래 집단검진프로그램</p>					

램을 평가해야만 한다. 첫째, 집단검진이 적절한 예견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둘째, 집단검진은 중요한 공중보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집단검진이 적절한 예견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그 유효성과 신뢰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집단검진이 중요한 공중보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국민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과학적인 공중보건의 관점에서는 적은 부담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유병율이 높은 집단에 대한 검진이 선호된다. 그런데 집단검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소수자 또는 소수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HIV집단검진은 동성애나 약물복용과 같은 행동과 연관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 범위를 확장하면 감염의 염려가 없는 자까지 포함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가치선택의 문제이므로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결국 정책결정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감염가능성이 높은 집단에게 최소의 부담을 주는 프로그램 중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사회정의와 공중보건을 형량해야만 할 것이다.